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56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김주영 · 임호선 · 김태선
정태호 · 안호영 · 이학영
문진석 · 이용우 · 박상혁
정진욱 · 박해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제51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사업주는 제51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조치 이행이 완료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예컨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를 명령하였음에도, 시정기간 중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

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 절단 등 중상해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음.

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및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대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5조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 제목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때”를 “발생하였거나”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하여”로, “그 작업”을 “작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을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를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로,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을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제168조제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69조제2호 중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명령한 시정조치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 ---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 ----- -----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	⑥ ----- 제5항----- ----- ----- ----- -- 제4항-----

제하여야 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신 설>

-----.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

발생하였거나 -----
-----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

----- 작업-----.

1.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2.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건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에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u>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u> ③ ----- ----- ----- ----- <u>발생할</u> <u>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u> ----- ----- ----- -----. ④ ----- ----- <u>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u> ----- ----- ----- ----- ----- <u>제3</u> <u>항에 따른 작업중지를</u> ----- -----. ⑤ <u>제4항</u>----- ----- ----- ----- ----- -----: 제168조(벌칙) -----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
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
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2항(제1
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
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
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
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
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자

-----.

1. (현행과 같음)

2. ----- 제53조제4
항-----

----- 제3항-----

제169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
---- 제53조제1항(제166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
다) · 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	------------------